중구 공고 제2023-77 호

2023년 1/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중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1/4분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1. 10.

중 구 청 장

☐ 1/4분기 융자규모 : 총 45억원

○ **빠른대출 실행을 위한 융자절차간소화(3천만원 이하) : 우리은행협력자금 5억원**

○ **중구 소재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(3천만원 초과) :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**

☐ 융자대상

○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(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)

※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(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) 가능자에 한하며, (신용보증서의 경우) 1년이내 보증이력 보유 또는 보증한도 미보유 / 세금체납, 연체이력 등 보유 /저신용점수(평가등급)의 경우 융자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

※ 대출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의 회수조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될 수 있음 (융자 실행 시 무작위로 적정 사용 여부 점검 예정)

※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☐ 지원내용 요약

※신용보증수수료 별도

융자규모	융자한도	담 보	대출금리	비 고
우리은행 협력자금 (5억원)	3천만원 이하 소액대출 (선착순)	신용보증서	연4~5%대 (변동금리)	절차간소화로 20일 내외 대출실행

중소기업 육성기금 (40억원)	전년도매출 1/2한도 내 **3천만원 초과 ~ 2억원 (제조업은 3억원까지)**	부동산, 신용보증서 (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필요)	**연1.5% (고정금리)**	구청·금융기관 심사 후 30일 내외 대출실행

※ 대출취급은행 : 우리은행 중구청지점(02-2274-4873, 내선310)

☐ 빠른 대출 실행을 위한 융자절차 간소화(우리은행협력자금 5억원)

○ 융자금액 : 3,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(선착순 선정)

※ 창업기업 등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업체 3,000만원 이하 신청

○ 융자규모(대출금리) : 우리은행협력자금 5억원 (연4~5%대 변동금리) 우선

○ 지원절차 : **접수 후에 금융기관(우리은행, 신용보증재단)으로 통보 후 대출실행**

※ 절차간소화건은 심의회에서 사후승인

☐ 중구 소재 중소기업자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(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)

○ 융자금액 : 3,000만원 초과 ~ 최고 2억원 (제조업체는 3억원)

※ 전년도 매출액의 1/2 한도 내 신청

○ 융자용도 :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기술자금

○ 상환기간 : 5년

○ 상환방식 :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

○ 지원절차

신청서 접수	⇒	융자대상자 선정	⇒	보증 검토 및 대출 심사	⇒	융자 실행
(업체→구청)		(구청심의위원회)		(신용보증기관, 은행)		(은행→업체)

※ 개별법률에 의해 지원하는 우리구 여성기업, (예비)사회적기업, 장애인기업, 창업기업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해 관련서류 제출자에게 심의 시 가점(5점) 부여

☐ 대출제한

○ 금융보험업, 부동산업, 보건업, 귀금속·주점·골프장·무도장·사치투기성업 등 붙임 지원제외업종

[중기부고시 제2021-39호,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8조(융자대상) ②제외대상에 따름]

○ 신용관리정보대상자 중 보증심사결과 부적격자 등

○ 신청일 현재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중인 업체

○ 국세·지방세 체납, 연체이력 보유, 담보 미제공 업체 등

□ 신청 방법

○ 접수기간 : 2023. 1. 16.(월) ~ 1. 27.(금) 9:00 ~ 18:00

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 (중구청 본관1층 현장접수센터)

○ 제출서류

- 공통제출서류

  ·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서약서 각 1부

  ·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법인등기부등본 1부(법인일 경우)

  ·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1부

  ·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2019 ~ 2022년) 1부

※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서약서 양식은 중구청 홈페이지 (www.junggu.seoul.kr)에서 다운로드 가능

- 추가제출서류 (해당업체에 한함)

  · 주민등록초본(대표자 또는 직원) → 중구민인 경우(직원은 재직증명서 추가 첨부)

  · 세목별 과세증명서(신청일로부터 1년) → 구세(재산세,등록면허세) 납부기업에 한함

  · 산업재산권 또는 기술자격증 및 수료증 등 증빙서류 → 보유자에 한함

  · 장애인기업 확인서(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행) → 보유자에 한함

□ 기타 사항

○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환수 조치

○ 휴업, 폐업, 타 시도로 이전 시에는 반드시 중구청 및 해당 은행에 통보하여야 함

○ 금융권 기대출자의 경우 융자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

※ 문의 : 중구청 도심산업과 소상공인지원팀(☎ 02-3396 - 5593)

대출제한업종 [중기부고시 제제2021-39호,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8조(융자대상) ②제외대상에 따름]

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 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'착한 임대인'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 신청 가능 ('20.12.~'22.12.)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

표준산업분류	업 종
	지속 중인 **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**은 신청가능 -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**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**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(통계청 기준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